

예 산 총 칙

2009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09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166,688,890	5,000,667
일반회계	162,283,786	4,868,514
일반회계	162,283,786	4,868,514
기타특별회계	4,405,104	132,153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420,752	12,623
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	277,715	8,331
주차장특별회계	3,428,680	102,860
지하수관리 특별회계	275,149	8,254
기반시설 특별회계	2,808	84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음.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음.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음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,798,002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시차입한도액은 상기 제1조에 의한 일시차입한도액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다.